

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07. 7. .

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12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간지원사업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을 부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,
-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, 대학교수, 민간전문가, 민간단체, 시민단체, 여성단체 회원 등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있으나,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은 위원에 포함되지 않아 위원으로 포함토록 수정하였음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12조제1항중 “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”를 “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”로 하고
- 안 제12조제2항중 “공무원”을 “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원, 공무원”으로 하였음

3. 참고사항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- 경상북도 기획관실-3815('06.6.28)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 통보

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

안 제12조제1항중 “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”를 “위원장과”로 하고
동조 제2항중 “공무원”을 “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원,
공무원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12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<u>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</u>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. ②위원회 위원은 <u>공무원</u>, 대학교수, 민간전문가, 민간단체, 시민단체,여성단체 회원 등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③(생략)	제12조(구성) ①..... <u>위원장과</u>..... ②..... <u>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원, 공무원</u> ③(개정안과 같음)

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” 를 “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9조 제목을 “사업비 정산검사 및 평가” 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시장은 보조사업의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.

④보조금을 교부 받은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 실적, 사업비 정산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 내지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위원회 설치)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보조사업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제11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보조금의 운영 및 보조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
2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제12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②위원회 위원은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원, 공무원, 대학교수, 민간전문가, 민간단체, 시민단체, 여성단체 회원 등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.

제13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4조(위원의 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5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
2.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3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4. 공적·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

제16조(회의 운영)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.

제17조(분과위원회)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.

②분과위원회는 문화·예술, 체육·봉사, 복지·환경, 경제·농업·기타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.

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18조(의견 청취)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보조사업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9조(실비보상)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” 을 “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” 으로 하며, 제3조중 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” 을 “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전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.